

[2021. 11. 18.자 기준]

영상재판 매뉴얼 - 외부참석자용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영상재판 운영지원단



1. 영상재판 관련 주요 용어 설명

▣ 영상재판

-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절차

▣ 영상기일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일

▣ 영상신문

- 영상재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인·감정인에 대한 신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영상법정

- 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한 온라인 공간

▣ 중계시설

-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

▣ 화상장치

- 참석자가 구비한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2. 개정법률 시행(2021. 11. 18.) 후 영상재판 활용 범위

가. 민사재판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시설

1) 변론기일 : 직접 출석 어려운 사정

▣ 편면적 신청, 동의 가능

2)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 상당한 사정(특별한 요건 없음)

▣ 편면적 신청, 동의 가능

3) 조정기일 : 민사절차 준용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당사자신문

5) 전문심리위원 :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신설로 근거 마련

나. 형사재판

1) 공판준비기일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시설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시설

3) 구속 이유 고지 :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시설



▣ 영상재판 허용 요건 및 방식

구분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방식	
민사	변론기일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신청권 없음, 이하 이 표에서 같음)		
	감정인신문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때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조정기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조정사무수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구속 이유 고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형사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Q** 영상 변론기일의 진행요건은 ‘당사자의 직접 출석 곤란’ 인데, 이를 ‘소송 대리인의 직접 출석 곤란’ 에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 A**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출석 곤란 역시 당사자의 출석 곤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영상재판 실시를 위한 사전절차

가.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동의

▣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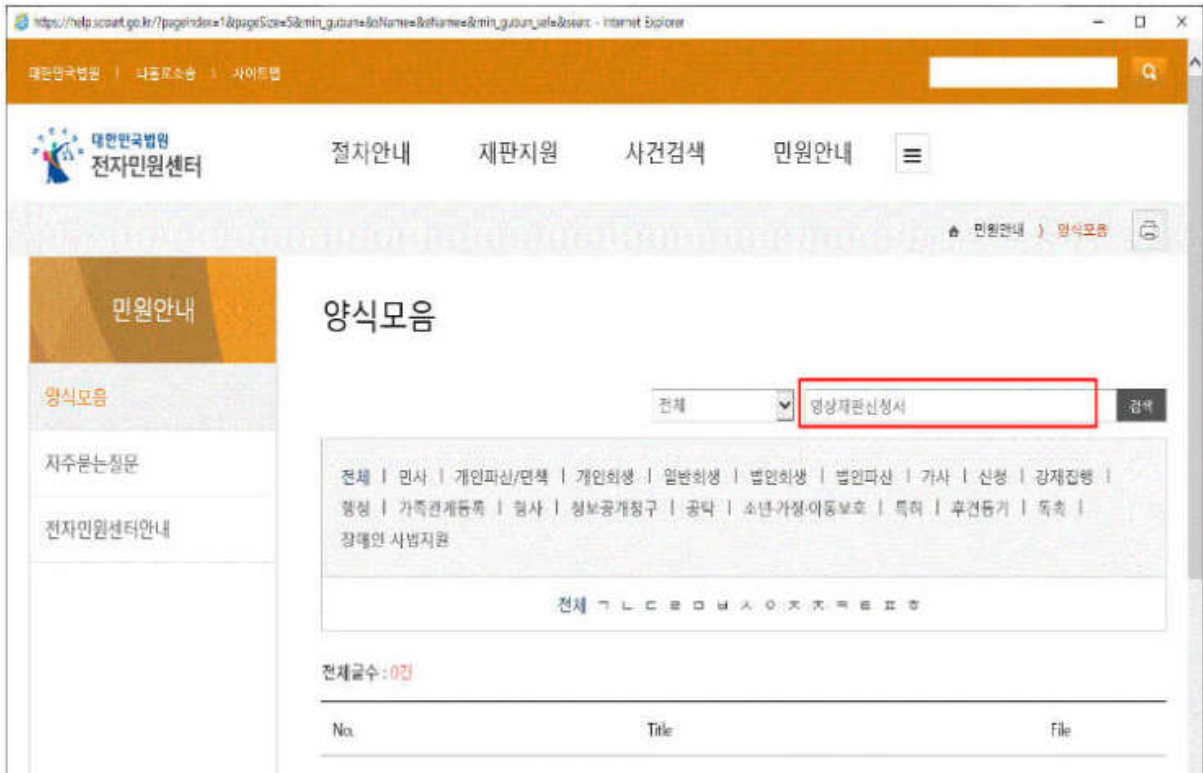
- 영상재판 실시에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그러한 신청 또는 동의 없이는 재판부가 임의로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없음

▣ 대상 절차

-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 신청 또는 동의 방법

-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기일(영상기일 포함)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 영상기일의 신청은 개별 기일별로 할 수 있고, 여러 기일을 일괄하여 할 수도 있음
 - ▶ 일단 영상기일을 실시하면 다음기일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는 해당 영상기일에 구두로 하게 될 것임
 - ▶ 영상재판 신청서 예시 : 별지 1
- 전자소송 이용자는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영상재판 실시 여부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일반적으로 기일통지서에 영상재판 실시 여부가 표시되므로 별도로 결정문을 작성하지는 않음
- ▶ 개정시간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동의는 서면, 모사전송, 전자우편이나 기일에서의 구두 진술로 이루어짐
 - ▶ 재판부로부터 의견조회서(예시 : 별지 2)를 받는 경우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미동의로 간주
 - ▶ 소송관계인이 동의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상기일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영상기일 통지를 한 다음 해당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로부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 ▶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영상기일 신청 취하 또는 동의 철회

-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본문)
 - ▶ 영상재판 신청취하(동의철회)서 양식 : 별지 3
 - ▶ 다만, 신청의 취하 또는 동의 철회가 소송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단서)
- 신청 취하 또는 동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은 취소됨
 - ▶ 한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에서 영상기일이 취소되는 경우,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출석장소가 양 쪽 당사자에게 적용됨(다만, 이 경우 영상기일이 취소된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서에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새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게 됨)
 - ▶ 양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기일을 지정하여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된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게 됨(다만, 종전 기일통지서에 영상기일 취소에 대비한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는 제외)



Q 원고가 영상재판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영상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양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영상재판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대면재판 방식으로 기일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원고와 피고 모두 영상재판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영상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양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영상재판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원고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원고 일방 영상기일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고에게는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피고에게는 실제로 출석할 법정을 기재하여 기일통지를 하게 됩니다.

Q 원고와 피고의 영상재판 신청에 따라 쌍방 영상기일이 지정되었는데, 피고가 기일에 임박하여 영상재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양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영상재판 신청 취하에 관한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기일은 쌍방 영상기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해당 영상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출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면, 피고에 대한 영상기일을 취소하고,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기일을 지정하되, 원고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원고 일방 영상기일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에



계는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피고에게는 실제로 출석할 법정
을 기재하여 기일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기일통지서에 영상기일 취
소에 대비한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새로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해당 기일을 원고 일방 영상기일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영상기일의 직권 취소

-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동의 철회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영상
기일을 취소할 수 있음
-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상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그 이후의 기일 진행, 기일
통지 등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동의 철회가 있는 경우와 같음

나. 소송관계인에 대한 의견 수렴

▣ 의의

-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재판 실시 여부
결정
 - ▶ 소송관계인의 의견은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
- 소송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신청권은 없음

▣ 대상 절차

- 증인·감정인등 신문, 전문심리위원 진술
- 조정사무수행일
- 공판준비기일
- 구속이유 등 고지

▣ 의견 수렴 방법

- 서면 제출 또는 기일에서의 구두 진술
- 서면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받은 의견조회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4. 영상재판 실시 방법

가. 개관

▣ 인적사항 확인

- 당사자 등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 중계 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 재판부에만 신분증 영상이 송수신되게 하는 방법
 - ▶ 생년월일 이외의 부분을 가리고 제시하게 하는 방법
 - ▶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경우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나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 영상기일에서의 문서 등 제시 및 제출 방법

- 영상기일에서 문서·도면·사진·모형·장치, 그 밖의 물건(민사소송규칙 제96조 제1항의 ‘문서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 검증목적물로 제출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제시·제출된 문서 등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직접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6항)

Q 영상기일에서 전자소송기록의 문서 제시가 필요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나 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제시할 수 있나요?



A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문서 제시’는 전자기록뷰어에 의한 제시를 의미합니다. 종이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실물화상기를 연동하거나 카메라에 직접 서류를 보여주는 방법, 스캔파일을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영상재판 과정에서 실물화상기 영상을 공유할 수 있나요?

A 실물화상기와 PC를 USB로 연결하여 실물화상기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영상기일에서의 문서 송달

● 전자문서 송달

- ▶ 영상기일에서 전자문서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종이문서 송달

- ▶ 종이문서 송달의 경우 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격방어방법의 진술을 위해 새로운 종이서류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함
- ▶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해당 영상기일에서 새로운 종이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심리 공개 방안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절차는 공개하여야 하고, 영상 변론 기일을 법정에서 여는 경우에는 공개심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음
- 다만,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②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 ▶ 이와 달리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의 경우, 반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상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않더라도 공개에 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형사재판에서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경우, 공판준비기일 역시 공개가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본문) 영상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공개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 영상공판준비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개함

Q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중계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인터넷 중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중계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중계 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공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Q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중계하는 방식의 예시가 궁금합니다.

A 예를 들어 법관, 법원사무관등, 당사자들은 모두 각자의 사무실에서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변론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빈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및 스피커로 송출함으로써 제3자도 해당 법정에서 들어와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심리 공개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

-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법원조직법 제59조)
- 영상법정에서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감치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 ▶ 이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름(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7항,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3 제7항)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

1) 출석 방법

-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
-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됨(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본문)
 - 불출석 간주되는 경우 쌍불취하, 자백간주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단서)

Q 당사자가 영상법정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 처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A 대면재판의 경우 실무상 당사자가 교통사고 또는 급한 사정 발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에서도 객관적으로 영상법정에 들어올 수 없는 사유, 예를 들어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 자체의 오류 등은 불출석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당사자 측 사유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 영상재판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전화착신음 등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영상재판 시 촬영되는 배경에 비공개 자료나 집중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등의 허가 없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는 금지됨

3) 영상재판 프로그램

- ▣ 법률, 규칙상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므로, 소송관계인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것임
 - 영상재판을 위해 법원 내부 서버에 영상재판 시스템 구축

4) 법원 도입 프로그램(VidoyConnect)에 따른 표준 실시 방법

- ▣ 재판부로부터 영상법정 접속링크 수령
 - 화상장치 이용 사건의 경우 기일통지서에 영상법정 접속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가 기재됨
 -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를 전달할 수도 있음



■ 접속링크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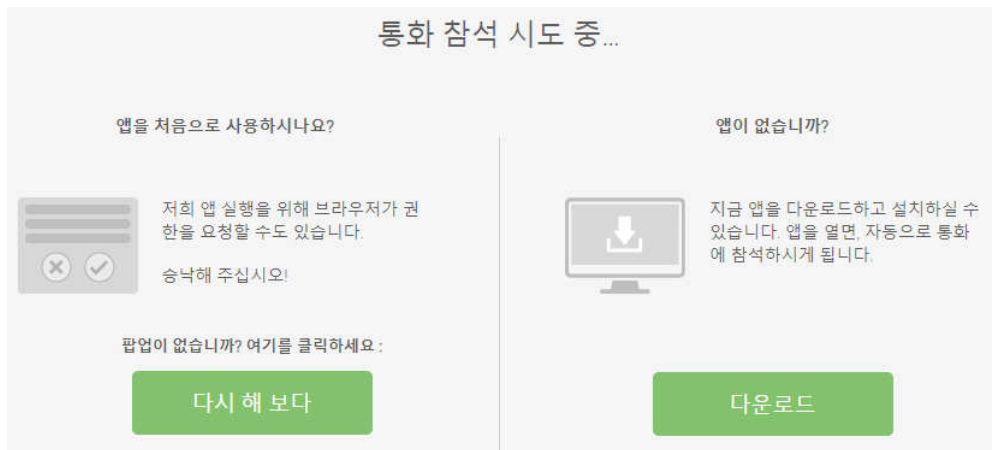
● 재판부 영상법정 접속링크 클릭

- ▶ 접속링크 클릭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접속링크 전체를 복사한 후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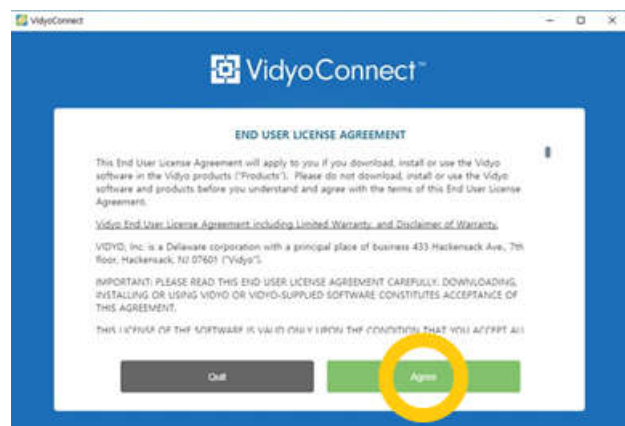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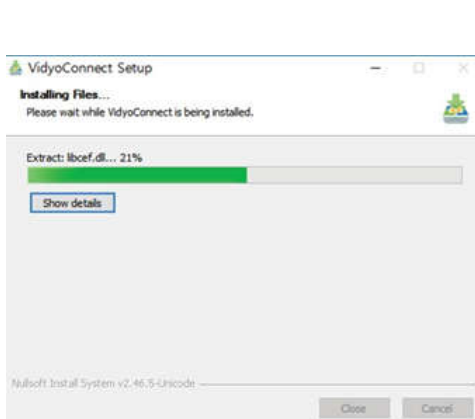
■ 영상재판 프로그램(VidyoConnect) 설치

● 접속링크를 클릭하여 VidyoConnect 프로그램 설치

- ▶ PC 사용을 권장하나, 태블릿·스마트폰용 어플도 있음 (이하 PC 기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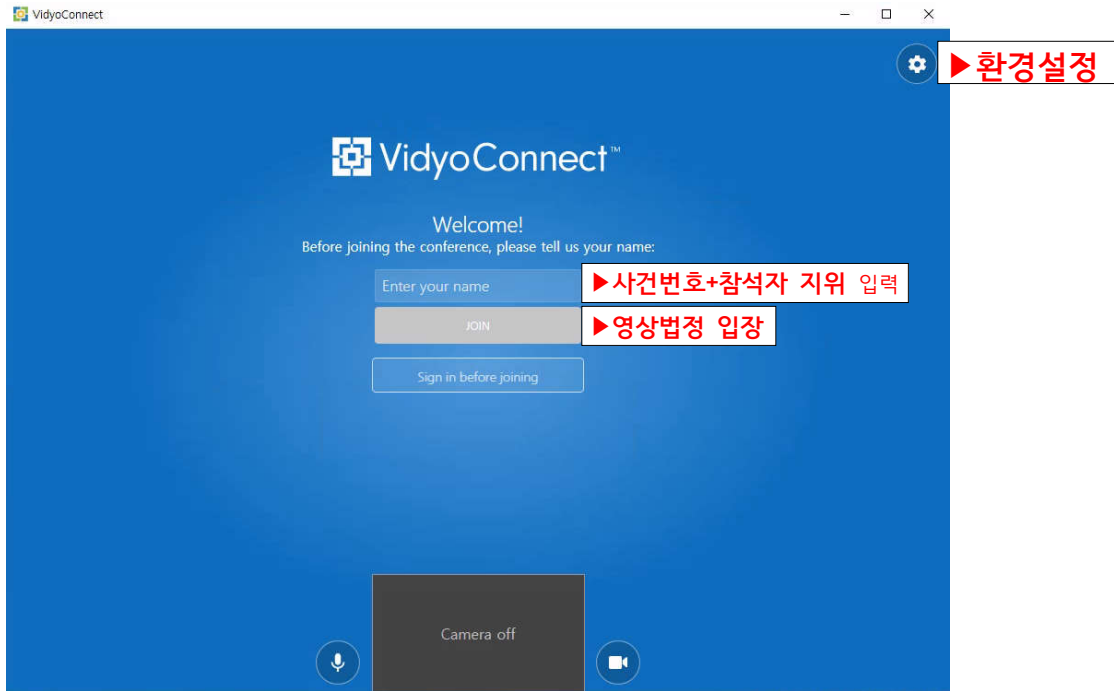
● 다운로드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Agree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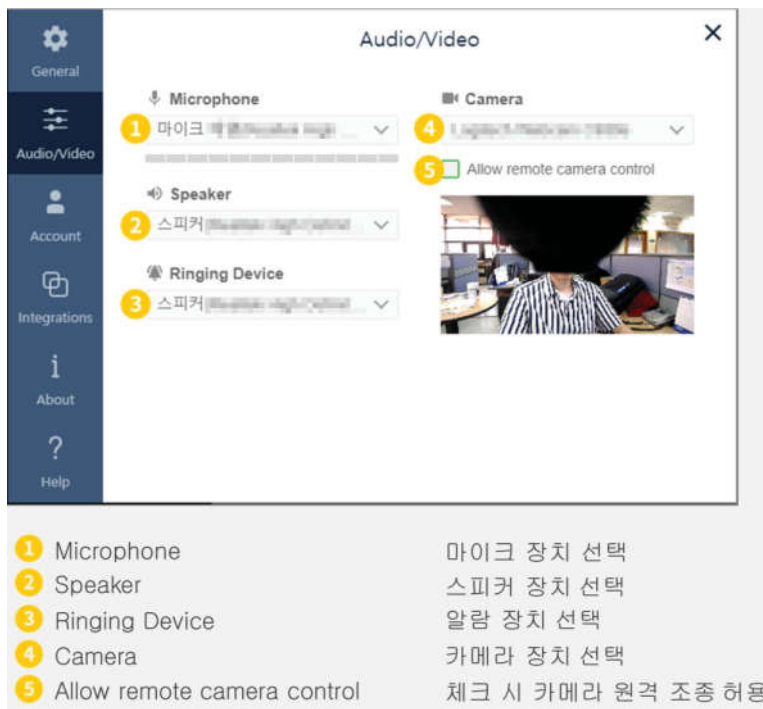


음성, 영상 설정 확인 및 참석자 명칭 입력



- 설치를 완료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 오른쪽 상단 환경설정 버튼(⚙️)을 클릭 후 왼쪽 메뉴 중 Audio/Video 클릭하여 사용하려는 ① 마이크, ② 스피커, ④ 카메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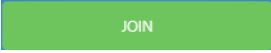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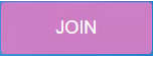
- 장치 선택 및 작동 테스트를 마쳤으면 마이크 아이콘 및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일단 마이크 및 카메라 작동을 중지함
 - ▶ 마이크 및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영상법정에 입장하면 이미 영상법정에 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 따라서 마이크 및 카메라를 중지한 상태로 영상법정에 입장할 필요가 있음(이 후 순서에 따라 사건 호명이 되면 마이크 및 카메라 작동 재개)
 - ▶ 마이크 중지 상태는  아이콘, 카메라 중지 상태는  아이콘으로 표시됨
- 에 아래 예시와 같이 ① 사건번호와 ② 참석자 지위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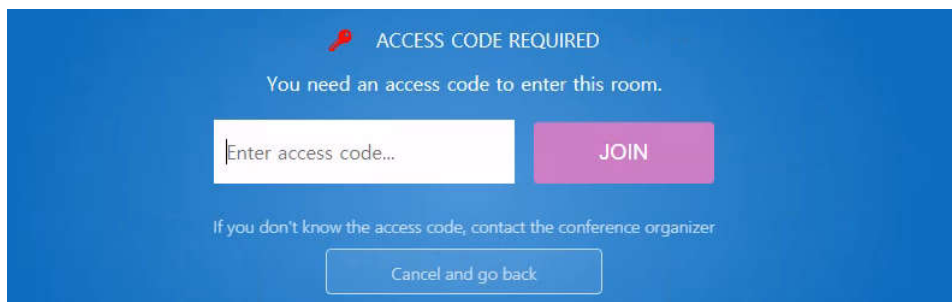
예시 1 : 2021나100001 원고 대리인

예시 2(다수당사자) : 2021나100002 피고 홍길동 대리인

예시 3(증인) : 2021나100003 증인 임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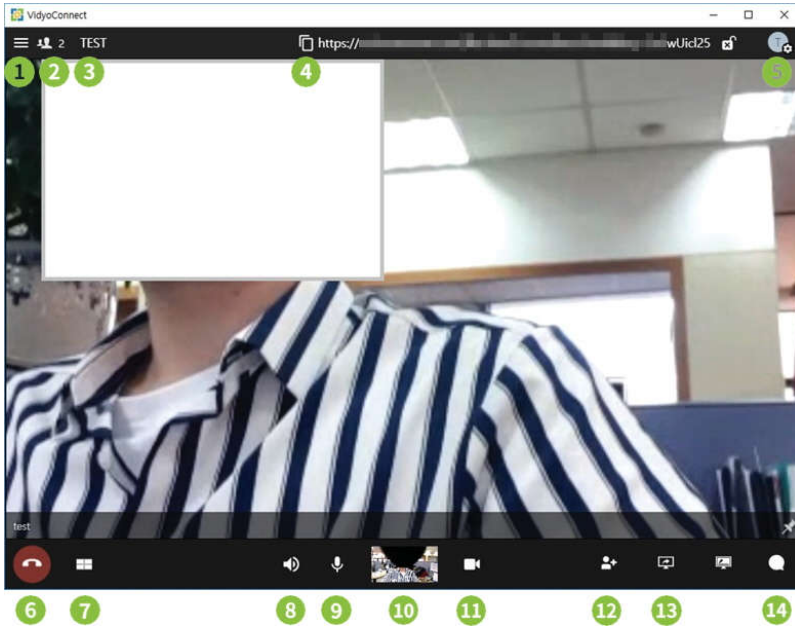
■ 영상법정 입장

-  버튼 클릭하여 영상법정 입장
 - ▶ 혹시 재판부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등장하는 경우, 기일 통지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버튼 클릭





▣ 영상재판 프로그램 기능 소개



- 1 참여자 리스트, 사용자 검색 메뉴
- 2 현재 참석자 수
- 3 현재 참여한 방 이름
- 4 회의방 URL 복사 버튼
- 5 사용자 설정 메뉴
- 6 영상 회의 종료
- 7 클릭 시 화면 분할 레이아웃 변경
- 8 스피커 ON/OFF
- 9 마이크 ON/OFF
- 10 클릭 시 자기화면 크게 고정
- 11 자신의 카메라 ON/OFF
- 12 참가자 초대
- 13 모니터, 문서 공유 기능
- 14 채팅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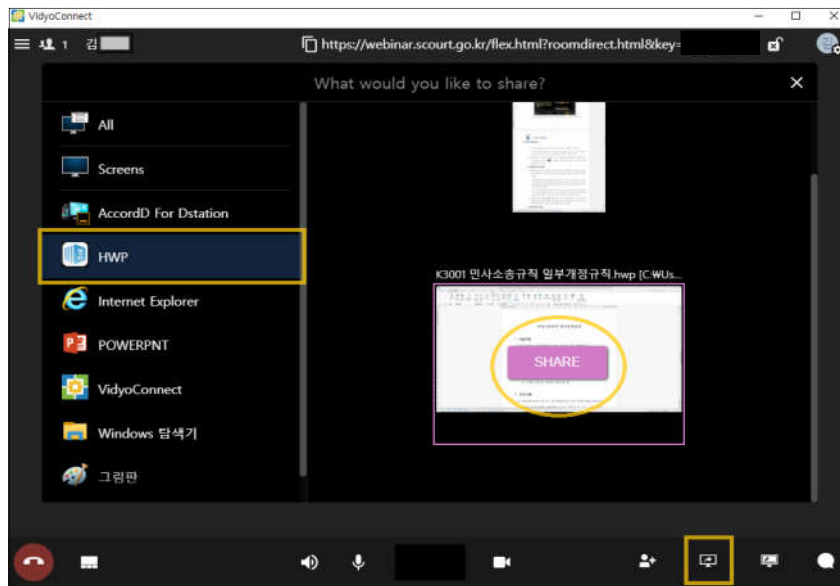
● 카메라, 마이크 ON/OFF 기능

- ▶ 앞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카메라 및 마이크의 작동을 정지한 채 대기하다가, 대상 사건이 호명되면 카메라 및 마이크를 켜

● 화면공유 기능

[개별 어플리케이션 화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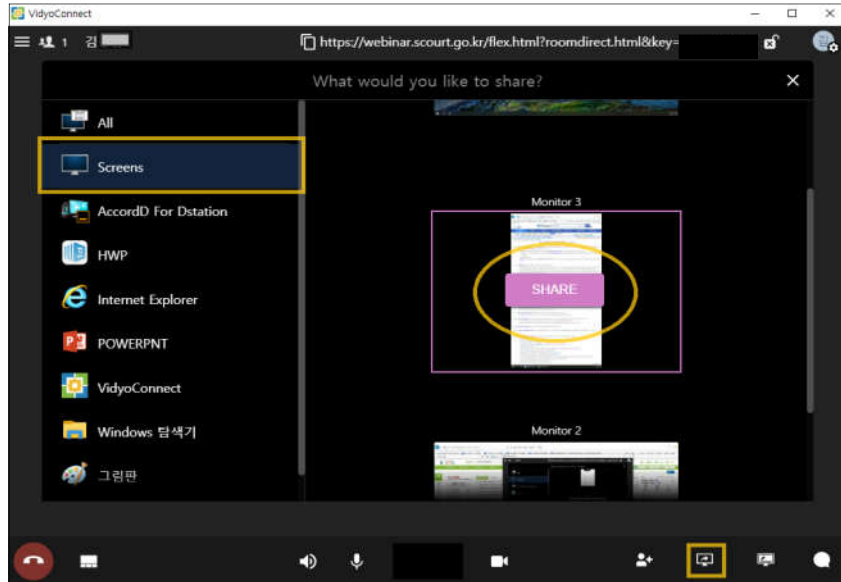
- ▶ 좌측 목록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Share’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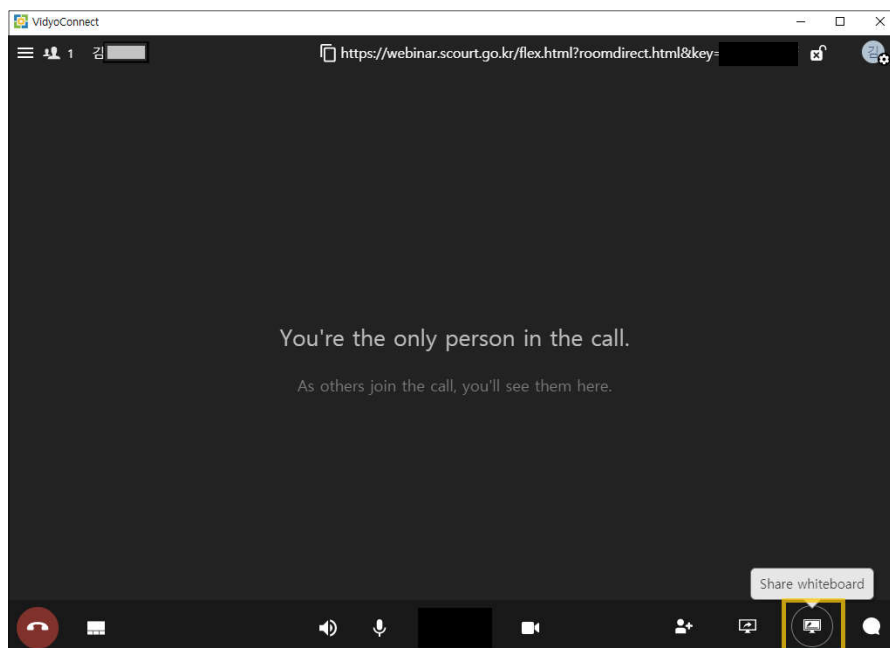
[모니터 화면 공유]

- ▶ 좌측 목록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모니터를 선택한 후 ‘Share’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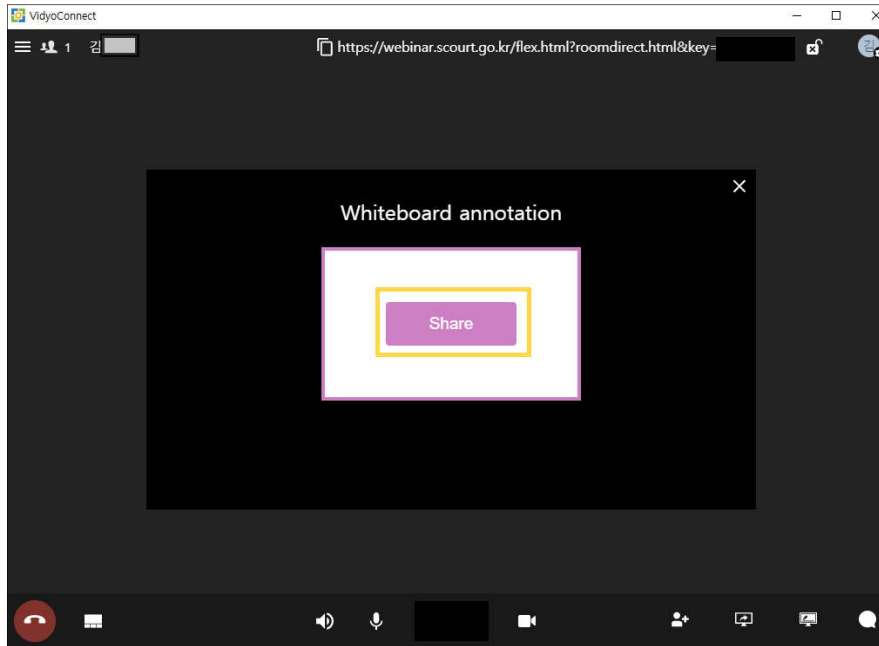


● 판서 기능

- ▶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Share whiteboard, 영상재판 프로그램 우측 하단 아이콘 )을 이용하여 각종 필기나 메모, 그림 등을 작성하여 공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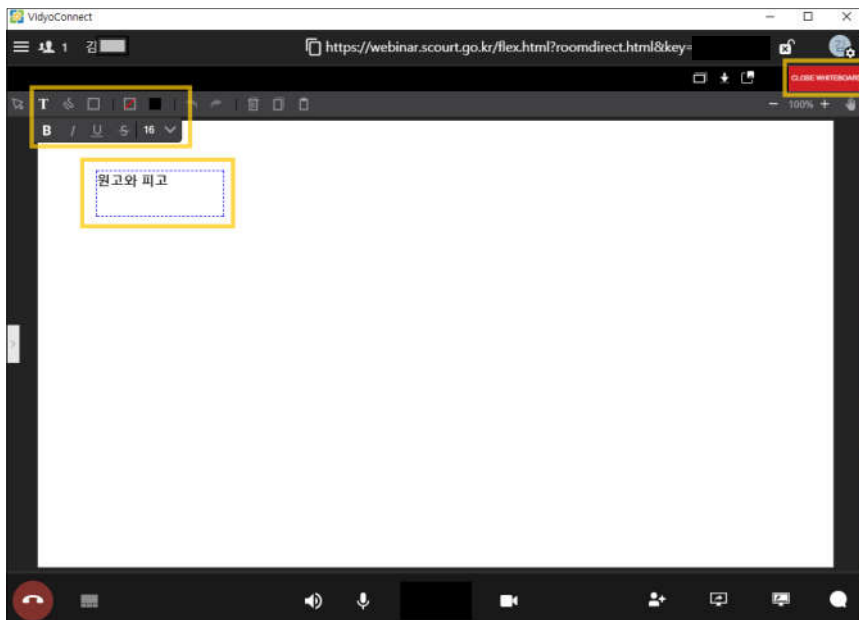


- ▶ 화면 중앙의 ‘Share’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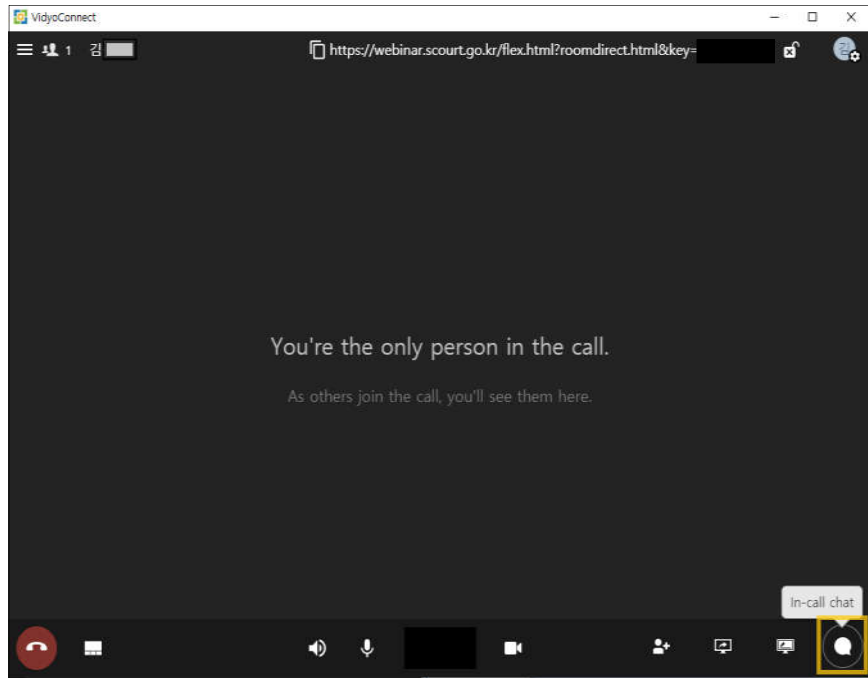
[화이트보드 실행 화면]

- ▶ 우측 상단 ‘T’ 아이콘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S’ 아이콘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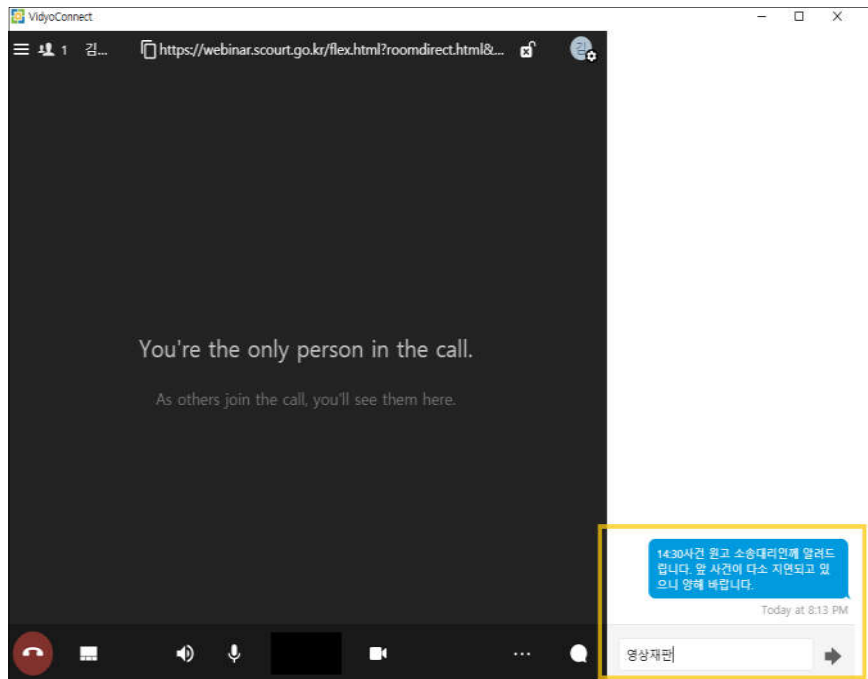


● 채팅 기능

- ▶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채팅 기능(In-call chat,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우측 하단 아이콘 )을 이용하여 화상회의의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



[채팅 기능 실행 화면]





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

▣ 개관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는 경우 출석장소가 수소법원 법정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면 출석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출석장소 지정 방법

- 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방문하여 용이한 곳으로 출석법원을 정한 후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호실 등 구체적인 출석장소를 지정함
-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동이 곤란하거나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소 또는 이와 가까운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를 출석장소로 지정함
- 당사자나 증인등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재판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 기일통지

-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의 기일통지서에는 출석법원과 호실 등 실제 출석해야 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송달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중계시설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됨

Q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법원의 법정이나 증언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A 각급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법원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법정에서 영상재판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설비 확충을 진행 중입니다.

Q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반드시 법원이 관리하는 시설(다른 법원 법정, 영상증언실 등)에 한하는 것인가요? 교정공무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치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요?

- A** 비디오 등 증제장치에 의한 증제시설은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전국 58개 교정기관 모두에 원격영상재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각 구치소마다 영상재판담당자를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구치소나 교도소에 설치될 원격영상재판실도 위 규정에 따라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된 ‘비디오 등 증제장치에 의한 증제시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지 1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

영상재판 신청서

사 건 20○○가단○○○○○ 사건명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는 위 사건의 아래 기일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지정기일	<input type="checkbox"/> 2021. . . 00:00 (기일) <input type="checkbox"/> 기일 미지정	
영상재판 신청 대상	아래 표시한 기일은 모두 영상재판으로 참석 <input type="checkbox"/> 변론기일 <input type="checkbox"/>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input type="checkbox"/> 조정기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일) - 여러 항목 표시 가능	<input type="checkbox"/> 위 지정기일 또는 이번에 지정되는 기일만 - 그 다음기일부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화상장치 - 개인 사무실이나 집에서 지정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 <input type="checkbox"/>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희망 출석장소 : 법원) -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 등에 설치된 중계시설로 출석	
희망 방식 및 장소		
신청의 이유	예시1) 교통 불편 예시2) 지병으로 거동 불편 예시3) 다른 사건과 기일 중복	

20○○. . .

원고(또는 피고) ○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

○○지방법원(○○지원) 제○민사부(단독) 귀중

◇ 유 의 사 항 ◇

1. 인터넷 화상장치에 필요한 장비 및 최소사양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PC 사용 권장).

	PC 또는 노트북 (웹캠, 마이크·스피커 또는 헤드셋)	모바일
최소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U : Core2Duo 2Ghz Memory : 4GB - 여유용량 : 500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U : Dual-core Memory : 512MB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Windows 10 32-bit and 64-bit macOS(Last two major 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droid 7,8,9,10 IOS 11,12,13
브라우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rome or Firef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rome on Android Safari on IOS

2. 영상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도록 기일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영상재판 신청취하(동의철회)서 양식]

영상재판 신청취하(동의철회)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 ○○○○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영상재판 신청(동의)을(를) 취하(철회)합니다.

20○○.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피고(또는 원고)는 원고(또는 피고)의 영상재판 신청(동의) 취하(철회)에 동의합니다.

피고(또는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 의 사 항 ◇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5항).



별첨

영상재판 관련 법령

1. 법률

가.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



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대법원규칙

가.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 ①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 ①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 ① 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이하 “영상기일”이라 한다)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② 법 제287조의2제1항의 재판장등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법원(이하 “재판장등 또는



법원”이라 한다)은 영상기일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른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영상기일의 신청 이후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2.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 ⑤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양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한 쪽 당사자로부터 영상기일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양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영상기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⑦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영상기일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통신불량, 소음, 문서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영상기일에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 관한규칙」에 따른다.
-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①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 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
-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나.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기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법원의 조정



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 ①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 ②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① 법 제266조의17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이하 “영상공판준비기일”이라 한다)은 검사, 변호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통신불량, 소음, 서류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 ⑧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